

라.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加療)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하도록 하는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33조 내지 제38조).

마.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 1인에 대하여는 농토구입대부·주택대부·사업대부·생활안정대부 등이 대부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 및 제42조).

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광주민주유공자로서 사망한 자를 안장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5·18묘지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63조).

사. 광주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모훈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안에서 예우를 행하지 아니함(법 제66조).

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70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

2002년 1월26일

국무총리 이한동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이근식
장관

◎法律 第6651號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各號의”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資產總額에서 負債額을 差減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負債額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동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1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

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제8조의2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리목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 라.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한 지주회사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의2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제3호에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제8조의3의 제목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을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第10條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消)의 規定에 의한 기존 債務保證”을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

한 채무보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해당하는 企業集團(이하 “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을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大規模企業集團”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 및 持株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를 “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外國人投資의 誘致 또는 中小企業과의 技術協力을 위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를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또는 産業發展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新産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3.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 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제10조제2항제1호중 “資本總計”를 “자본총계와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012호

번

부

2002. 1. 26. (목요일)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부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열회사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때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2. 지주회사
3.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大規模企業集團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企業集團(이하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을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大規模企業集團”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12호
국
표
2002. 1. 26 (토요일)

제11조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 나. 정관 변경
 -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 제1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大規模企業集團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集團”을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와 기업결합한 경우

제13조제1항중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大規模企業集團 및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大規模企業集團으로 지정되어 同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 통지를 받은 會社 또는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規模企業集團의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同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 통지를 받은 會社”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중 “1년간은”을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會社整理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和議法에 의한 화의절차(이하 이 호에서 “회사정리절차등”이라 한다)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

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사정리절차등이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大規模企業集團"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한다.

제14조의3중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第4項"을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으로, "大規模企業集團"을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한다.

제14조의4 각호외의 부분중 "大規模企業集團 또는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동조제2항중 "第8條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을 각각 "제8조의3(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가. 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제8조의2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 당시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의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처 1년이 경과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시정조치) 및 제17조(과징금)의 규정에 같음하여 그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상회사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대상 주식의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대상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의 명세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大規模企業集團 系列會社”를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로 한다.

제55조의4제2항중 “그 納付期限의 10日 전까지”를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66조제1항제4호중 “第8條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을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있는 자”를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7조제6호중 “제21조”를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제21조”로, “是正措置 등에 응하지”를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

하지”로 하고, 동조제7호중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第5項”을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제4호중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第4項”을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으로 한다.

제68조제5호·제6호 및 제69조제1항중 “調査 및 意見聽取등”을 각각 “조사등”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로, “제6호”를 각각 “제7호”로 하고, 동항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5호 내지 제8호(중전의 제4호 내지 제7호)중 “調査 및 意見聽取등”을 각각 “조사등”으로 한다

4.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법률 제6043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부칙 제2조 전단중 “2001年 3月 31日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한한다.”를 “2002年 3月 31日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이 대하여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고, 동조 후단중 “당해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날은 이를 2001年 4月 1日로 본다.”를 “1998年 1월 1일부터 2001年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은 2001年 4월 1일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금

제15012호

단

부

2002.1.16. (토요일)

용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중 기업구조조정
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소급적용) ①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
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은 제외한다)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고 2001년 3
월 31일 이전에 취득 또는 소유한 때에는 이를 2001년 4월 1일 취
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2001년 4월 1일
(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
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나
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이유

1998년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
한 각종 제도가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지배력의 확장을 위한 과
도한 출자행위는 계속 억제하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핵심역
량으로의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
여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대상 기업집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내상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0조의2 및 제14조).

나.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핵심역량의 집중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출자, 공기업민영화대상회사의 인수를 위한 출자 등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0조제6항 신설).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임원임면·정관변경 등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법 제11조제3호 신설).

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그에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처분명령을 하는 대신에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의2 신설).

마.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출

자총액제한 예외인정시한을 2001년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2년간 연장함(법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6043호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법제처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

국회 홈페이지 : WWW.assembly.go.kr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인

2002년 1월26일

국무총리 이한동

국무위원
통일부장관 홍순영

○대통령령 제17493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4조”를 “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호적등본”을 “주민등록등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등록대행기관)”을 “(대행기관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12호

관

부

2002. 1. 26. (토요일)